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9 선고 2022가단530506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, 손성락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,770,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9. 15.부터 2022. 10. 14.까지 연 6%, 2022. 10. 15.부터 2022. 10. 19.까지 연 9%, 2022. 10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는 24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강건우

별지